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증명서 번호: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발급국 _____ (뒤쪽 설명을 참조합니다)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3.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국가:						
4. 운송 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 지 기재합니다) 출발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			5. 비고:			
6. 물품 의 연번 (최대 20)	7. 포장의 표장 및 번 호	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	9. HS 번 호(6단위)	10. 원산 지 기준	11. 총중량, 수량(수량단위) 또는 그 밖의 단위(리터, m ³ 등)	12. 송장 번호 및 일자
13.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 이고, 모든 상품이 _____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수입국)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한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4. 증명: 수행한 검사에 기초하여,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중국 자유무역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하 다. (장소 및 일자, 권한 있는 기관의 서명 및 관인)		

뒤쪽 설명

증명서 번호 : 권한 있는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만든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생산자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이란에 기재된다. 증명서의 발행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정등본일 경우 “(날짜)에 발행된 (번호)번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제6란 :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7란 : 포장에 운송표장 및 숫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운송표장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 “이미지 또는 기호(I/S)”를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표장이나 숫자 없음(N/M)”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제9란 : 제8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10란: 수출자는 제10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되고 정의되거나 또는 그리하게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WP
해당 상품이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제3.3조(특정 상품의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명시된다.

제13란: 이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4란: 이란은 권한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주 :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이 지침은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인쇄되거나 기재될 수 있다.